

선택이 합격입니다!.

선택은 **적중률**과 **합격률**로 결정해야 합니다.

진용 전공역사팀은 오직 수험생을 위하여 **적중**과 **합격**으로 증명합니다.

합격의 기쁨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저희는 부듯한 보람을 가져오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은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전공역사 PASS MAKER

—진용팀—

—여러분을 위한 합격 인솔자—

강의에 감동하고	▪ 적중이 실력이고, 실력이 권위입니다. ▪ 최고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칩니다.	정성껏 가르치고, 다뜻하게 배려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성적에 감탄하고	▪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철저한 DB 분석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 과목별 수시 상담을 통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합니다.	
합격에 감격한다	▪ 효과적으로 공부하여 안전하고 넉넉한 합격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초집중으로 공부하도록 관리하여 최단기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공역사

적증증명!

진정한 권위는 실력입니다!
이렇게 적증시켜 드렸습니다!.

[2020 한국사, 동아시아사 출제 분석]

구분	한국사	동아시아사
전공 A형 [6문제] -한국사[3] -중국사[3]	[3번(기입형)] [주제] 조선 정치 기구의 변화와 기능 -도평의사사, 6조	[4번(기입형)] [주제] 서진 정치 상황 -회제 시기의 영가의 난[307~312]과 낙양 함락
	[5번(서술형)] [주제] 대한제국 말기 언론활동과 일제의 언론탄압 -제국신문[1898~1910] -대한매일신보[1904~1910] -신문지법[1907]	[7번(서술형)] [주제] 당나라 안사의 난 이후 경제 -숙종 시기 제오기, 유안의 재정 개혁의 특징
	[10번(서술형)] [주제] 한국 사학사 -<동명왕편>에서 인용한 <구삼국사> -직서주의 편찬 원칙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의 역사인식의 특징을 <구삼국사>와 비교하기	[11번(서술형)] [주제] 중국 청조 말기 열강의 이권침탈 조약과 내용 -(가) 제1차 중·아밀약[이홍장-로바노프 협정, 1896.6='러청밀약'] -(나) <뤼순 다렌 조차에 관한 협약(1896.3)> -(다) <포츠머스조약(1905.9='러일강화조약')>
전공 B형 [6문제] -한국사[4] -중국사[2]	[1번(기입형)] [주제] 민족해방운동사[1920~1930년대 노동운동사] -원산노동연합회[1921~] 주도의 원산총파업[1929] -193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코민테른 12월테제(1928), 프로판테른 9월테제(1930)]	[7번(서술형)] [주제] 중국 고대사 -신[新] 왕조, 《주례(周禮)》 -왕전제의 내용[2가지]
	[2번(기입형)] [주제] 고대사회 발전기[삼국시기 삼국전쟁사] -대야성 -단양적성비[545~550]	[9번(서술형)] [주제] 중국 현대사[명사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우창,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지에서의 담화요점(1992)='남순강화(南巡講話)' -광둥의 경제특구 : 산터우, 선전 , 주하이 -㉠[하나의 중심-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두 가지 기본점-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을 통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채택] -㉡[시장]
	[4번(서술형)] [주제] 고대사회 발전기[삼국시기의 수취제도] -대인[大人]과 대가[大加]의 수취과정에서의 역할 -고구려, 신라 세제의 특징 -고구려, 신라 세제를 통한 지역 지배 방식	
	[10번(서술형)] [주제] 현대 정치사[1952년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 1954년 4사5입개헌] -㉠[대통령 간선제] -㉡[발췌]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조항 철폐,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합계 [12문제]	총 7문제	총 5문제

한국사	2020 전공역사 기출문제	2020 대비 2019 합격모의고사
전공A형 [3번(기입형)]	3. 밑줄 친 ㉠과 ㉡에 들어갈 정치기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 凡有大事 使以上會議 故有合坐之名。事元以來 事多倉卒 僉議密直 每爲合坐。… (중략) … 恭讓王四年 各司受稟公事 皆令直報 ㉠ 勿隸 ㉡ 。 -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 ○ 命門下侍郎贊成事河崙 更定官制 改 ㉠ 爲議政府。 - 『定宗實錄』 卷4, 2年 4月 6日 - ○ 今 ㉡ 判書 皆增其秩 以曾經兩府者爲之。其委任各有所掌 又有其屬。本府則無所不總 而持其大體者也。今乃勞於煩冗 細務 反若 ㉡ 之所役屬 大失設官分職之體。 - 『太宗實錄』 卷15, 8年 1月 3日 -	합격모의고사 [출제예제] 제시된 사료 (가)와 (나)의 정치 운영 제도를 쓰시오. [적중 유사] (가)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 대신은 작은 일까지 친히 간섭할 필요가 없으니 군사에 관계되는 나라의 중대한 일만을 의정부에서 회의하여 아뢰게 하고, 그 외의 일은 육조에서 각기 맡은 직분에 따라 임금께 직접 아뢰어 시행하게 하소서” 이로부터 일의 경중(輕重)과 대소(大小)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이 육조로 돌아가고, 의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의정부에서 참여하여 아뢰는 것은 오직 사형수들에 대한 논결(論決) 뿐이었다. (나) 지금 태조께서 제정하여 놓으신 법에 의하여 육조에서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稟議)하고, 의정부에서는 가부를 의논한 후에 임금께 아뢰어서 분부를 받고 도로 육조로 돌려보내서 시행하게 하되, 오직 이조와 병조에서의 관리를 제수하는 것이나, 병조에서 군사를 쓰는 것이나, 형조에서 사형수 이외 죄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일은 해당 6조로 하여금 임금께 직접 아뢰어서 시행하고 즉시 의정부에 보고하게 하는데, 만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의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심의·논박하고 다시 계문해서 시행하게 하라. 『세종실록』 권72, 18년 4월 12일(무신)
전공A형 [10번(서술형)]	10.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세상에서 동명왕(東明王)의 신이(神異)한 일을 많이 이야기한다. 비록 배운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능히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가 일찍이 그것을 듣고 웃으면서 이르기를, “선사(先師) 공자께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로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뒤에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어보니 역시 그 일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않았으니, 이는 국내의 일은 상세히 하고 외국의 일은 소략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지난 계축년 4월에 (㉠)을/를 얻어서 동명왕 본기(本紀)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귀환(鬼幻)하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번 탐독, 음미하여 차차로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요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 직필하는 책이니 어찌 헛되이 이것을 전하겠는가. (나) 논하여 말하기를, 신라의 왕으로서 거서간이라 칭한 이가 하나요, 차차웅이라 한 이가 하나요, 이사금이라 한 이가 열여섯, 마립간이라 한 이가 넷이다. 신라 말의 명유(名儒) 최치원은 『제왕연대력(帝王年代曆)』을 지을 때, 모두 무슨 왕(王)이라 칭하고 거서간 등의 칭호는 말하지 않았으니, 그 말이 비루하여 족히 실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 (중략) … 지금 신라의 사적을 기록함에 있어 ㉢ 그 방언(方言)을 그대로 두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작성 방법>— ○ ㉠에 들어갈 서명을 쓸 것. ○ 밑줄 친 ㉡과 ㉢에 공동으로 해당하는 전통시대 사서의 서술 원칙을 쓸 것. ○ (나)의 저자가 지닌 역사인식의 특징을 ㉠과 비교하여 2가지 서술할 것.	합격모의고사 [출제예제] 다음 (가), (나)의 설명에 해당되는 역사서를 쓰고, (가)와 (나)가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의 시기 구분을 쓰고, 그 나라 계승의식이 나타난 배경을 대외관계 면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사료 적중] (가) 대체로 옛 성인들은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어,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紀異篇)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 요동에 다른 천하가 있으니 그 땅은 중조(中朝)와 구분되어 나뉘었네. 크고도 넓은 바다 물결 삼면을 둘러쌌고 북녘으로는 대륙과 연결됨이 선 같았다. 그 가운데 사방 천리가 바로 조선이라, 강산의 형승은 천하에 알려졌네. 발 갈아 농사짓고 우물 파 물마심이 예의의 나라라 화인이 이름 하길 소중화(小中華)라 했네. [출제예제] 다음 사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사료 적중] (가)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花郎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羣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唐令狐澄新羅國記曰, 擇貴人子弟之美者, 傳粉粧飾之, 名曰(㉣), 國人皆尊事之也.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7年

		(나) 論曰 新羅王稱居西干者一 次次雄者一 尼師今者十六 麻立干者四 羅末名儒(㉞)作(㉟) 皆稱某王 不言 居西干等 豈以其言鄙野不足稱也 曰左漢 中國史書也 猶存楚語穀於菀匈奴語撐犁孤塗等 今記新羅事 其存 方言 亦宜矣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전공B형 [2번(기입형)]	2. ㉠에 공통으로 들어갈 성(城)의 명칭을 쓰고, 신라가 밀줄 친 ㉡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의 명칭을 쓰시오. [2점] ○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 을/를 쳤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의자왕 2년- ○ (㉡)의 패전에서 도독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는 춘추의 딸이었다. 춘추가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중일토록 눈을 깜박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도 알지 못했다. 얼마 후 말하기를,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랴.”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해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허락했다. …(중략)… 고구려의 왕이 (춘추에게) 말하기를, “㉡ 죽령은 본디 우리의 땅이니 네가 만일 죽령 서북의 땅을 돌려주면 원병을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선덕왕 11년-	합격모의고사 [출제예제] 다음 사료의 ㉠과 ㉡에 해당하는 왕을 쓰고, ㉠왕이 ㉡지역에 세운 비석명을 두 개 쓰시오. [적중 유사] 九年，春二月，高句麗與穢人，攻百濟獨山城。百濟請救，㉠王遣將軍朱玲，領勁卒三千擊之，殺獲甚衆。 十一年，春正月，百濟拔高句麗道薩城。三月，高句麗陷百濟金峴城。㉠王乘兩國兵疲，命伊滄異斯夫，出兵擊之。取二城增築，留甲士一千戍之。 十二年，……(中略)……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乘勝取十郡。 十四年，……(中略)…… 秋七月，取百濟東北鄙，置新州，以阿滄武力爲軍主。 十五年，……(中略)…… ㉡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逆戰失利。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及交戰，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急擊殺㉡百濟王。於是諸軍乘勝，大克之，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匹馬無反者。 ……(中略)…… 十六年，春正月，置完山州於比斯伐。冬十月，㉠王巡幸北漢山，拓定封疆。十一月，至自北漢山，敎所經州郡，復一年租調，曲赦，除二罪，皆原之。 十七年，秋七月，置㉡比列忽州，以沙滄成宗爲軍主。 ……(下略)……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출제예제] 밀줄 친 ㉠왕명과 ㉠왕이 남한강 유역에 진출하면서 세워진 비[碑]를 쓰고, 금강 상류 지역 진출에 대한 대응으로 신라가 충북 보은에 산성을 축성한 왕과 산성 명칭을 쓰시오. [적중] 二十一年秋九月，麗王㉠巨璉，帥兵三萬，來圍王都漢城。王閉城門，不能出戰。麗人分兵爲四道夾攻，又乘風縱火，焚燒城門。人心危懼，或有欲出降者。王寤不知所圖，領數十騎，出門西走。麗人追而害之。……(下略)…… 『三國史記』卷25 [출제예제] 다음 사료의 ㉠에 들어갈 주명[州名]과 ㉡에 들어갈 성명[城名]을 쓰시오. [적중]

		善德大王十一年壬寅，百濟敗(㉠)，春秋公女古陁炤娘，從夫品釋死焉。春秋恨之，欲請高句麗兵，以報百濟之怨，王許之。將行，謂庾信曰，吾與公同體，爲國股肱，今我若入彼見害，則公其無心乎。庾信曰，公若往而不還，則僕之馬跡，必踐於麗・濟兩王之庭。苟不如此，將何面目以見國人乎。春秋感悅，與公互噬手指，歃血以盟曰，吾計日六旬乃還。若過此不來，則無再見之期矣。遂相別，後庾信爲押梁州軍主。 ……(중략)…… 眞德王太和元年戊申，春秋以不得請於高句麗，遂入唐乞師。太宗皇帝曰，聞爾國庾信之名，其爲人也如何。對曰，庾信雖少有才智，若不籍天威，豈易除鄰患。帝曰，誠君子之國也，乃詔許，勅將軍蘇定方，以師二十萬，徂征百濟。 ……(중략)…… 遂簡練州兵赴敵，至(㉡)外，百濟逆拒之。佯北不勝，至玉門谷，百濟輕之，大率衆來。伏發擊其前後，大敗之，獲百濟將軍八人，斬獲一千級。於是使告百濟將軍曰，我軍主品釋及其妻金氏之骨，埋於爾國獄中。今爾裨將八人，見捉於我，匍匐請命，我以狐豹首丘山之意，未忍殺之。今爾送死二人之骨，易生八人，可乎。 百濟仲常【一作忠常】佐平言於王曰，羅人骸骨，留之無益，可以送之。若羅人失信，不還我八人，則曲在彼，直在我，何患之有。乃掘品釋夫妻之骨，櫝而送之。庾信曰，一葉落，茂林無所損，一塵集，大山無所增，許八人生還。遂乘勝入百濟之境， ……(하략)……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 上
전공B형 [4번(서술형)]	4.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서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臣屬)되었다. 고구려는 동옥저의 ㉠대인(大人)들을 사자(使者)로 삼아 서로 (말은 지역을) 이끌도록 하고, ㉡대가(大加)로 하여금 그 조세를 통책(統責)하도록 했다. 맥포, 물고기, 소금, 해산물을 천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운반해 온다. 또한 그 미녀를 보내오니 비첩(婢妾)으로 삼고 노복(奴僕)처럼 대한다. - 『삼국지』 동옥저전 - (나) ○ 인세(人稅)로 포 5필과 곡물 5석을 낸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10명이 세포(細布) 1필을 낸다. 조(租)로서 호(戶)마다 1석을 내고, 차등호(次等戶)는 7두, 그 다음 호는 5두를 낸다. * 유인: 말갈족 같은 이종족 집단이나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주민을 가리킨다. - 『수서』 고려전 - ○ 경상남도 함안의 성산산성에서 삼국시기의 목간(木簡)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 목간의 대부분은 신라가 아라가야를 정복한 후 축성 또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신라 각지에서 운송해 오면서 납부자의 신상, 물품의 종류와 분량 등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及伐城只利禪石』이라고 기록된 목간은 '금벌성에 사는 지리가 곡물인 피를 1석 납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목간 끝 부분 양쪽에 홈을 파서 끈으로 포대에 달아낼 수 있도록 했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과 ㉡이 수취 과정에서 각각 수행한 역할을 서술할 것. ○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취 대상을 쓸 것. ○ (나) 방식의 수취를 가능하게 한 지역 지배의 방법을 쓸 것.	합격모의고사 [출제예제] 다음은 고구려 후기의 수취제도에 관한 사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직중] ㉠人稅布五匹・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隋書』卷81, 「列傳」46 東夷列傳 高麗傳 [주제] 고구려의 수취 제도 (1) 위 사료를 토대로 고구려의 수취제도는 크게 ㉠세[稅]와 ㉡조[租]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각각 ㉠과 ㉡의 기준을 쓰시오. [정답] ㉠세[稅]의 기준은 가호세[家戶稅], ㉡조[租]의 기준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호등[戶等-3등호제] 고구려의 부세제도는 『수서』 ‘고려전’에 근거해 종래에는 인세를 인두세로 파악하여 가호의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인세를 부과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수서』 ‘고려전’의 인세[人稅]는 가호 단위로 부과했다고 이해된다. “인세(人稅)는 베(布) 5필에 곡식 5석이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10인이 가는 베(細布) 1필을 함께 낸다. 조(租)는 상호가 1석이고, 그 다음이 7두이며 그 다음은 5두를 낸다.” (『수서』 ‘고려전’) 위의 자료는 고구려가 인세, 유인세를 거두고 다시 가호 단위로 조(租)를 거두었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유인은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즉 인세는 정남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호를 단위로 부과한 세제로 본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서 ‘인세[人稅]’라고 명명한 것은 경남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에서 발견(1992, 1994, 2002)된 신라 목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호의 대표인 호주(戶主) 개인별로 균액의 부세를 과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비록 인세(人稅)는 가호의 호주마다 균액을 부

		과했지만, 조(租)의 경우는 호등(戶等)에 따라 그 양에 차등을 두고 부과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가호마다 납부하는 부세량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주서』 ‘고려전’에서 부세의 양이 빈부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세(賦稅)는 견(絹)과 포(布) 및 속(粟)을 거두되,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 소유한 것을 수취한다. 양은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둔다.” (『주서』 ‘고려전’) 단, 가호를 3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둔 조(租)의 실체는 조용조제에서 말하는 조(租)라기보다는 인세 외에 가호 단위로 부과한 부가세일 가능성이 크다. 부가세로 보이는 조(租)는 진대(賑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부세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tr><td rowspan="3">고구려수취제도 [종류]</td><td>세 [稅]</td><td>인세 [人稅]</td><td>정남[丁男] 중심으로 구성된 가호 단위로 부과한 세액</td><td>1인당 매년 베5필+곡식5석</td></tr><tr><td></td><td>유인세 [遊人稅]</td><td>비농업가호 일반에게 부과된 세액</td><td>10인이 합하여 3년마다 가는 베(細布) 1필</td></tr><tr><td colspan="2">조 [租:호조(戶租)]</td><td>자산[資產]에 따른 3등호제</td><td>· 상호[上戶] : 1석 · 중호[中戶] : 7두 · 하호[下戶] : 5두</td></tr></table>	고구려수취제도 [종류]	세 [稅]	인세 [人稅]	정남[丁男] 중심으로 구성된 가호 단위로 부과한 세액	1인당 매년 베5필+곡식5석		유인세 [遊人稅]	비농업가호 일반에게 부과된 세액	10인이 합하여 3년마다 가는 베(細布) 1필	조 [租:호조(戶租)]		자산[資產]에 따른 3등호제	· 상호[上戶] : 1석 · 중호[中戶] : 7두 · 하호[下戶] : 5두
고구려수취제도 [종류]	세 [稅]	인세 [人稅]		정남[丁男] 중심으로 구성된 가호 단위로 부과한 세액	1인당 매년 베5필+곡식5석										
		유인세 [遊人稅]		비농업가호 일반에게 부과된 세액	10인이 합하여 3년마다 가는 베(細布) 1필										
	조 [租:호조(戶租)]		자산[資產]에 따른 3등호제	· 상호[上戶] : 1석 · 중호[中戶] : 7두 · 하호[下戶] : 5두											

동아시아사	2020 전공역사 기출문제	2020 대비 2019 합격모의고사
전공A형 [9번(서술형)]	(나)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특징은 무엇일까? 책봉·조공은 근대적 조약 체제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중원 왕조와 주변 국가가 맺던 대표적인 외교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흔히 국가적 힘의 우열 관계로 파악하여 굴욕적인 외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책봉·조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책봉·조공 관계는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조공국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고구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국제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이 시대의 책봉·조공 관계는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맺는 현실적이고 다원적 외교 관계로 변화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실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다) 고려의 국제적 위상과 자주 의식 고려는 황제국을 자처하였다. 이는 원간섭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에 유지된 자주적인 고려의 특징이었다. 고려 국왕은 면류관과 곤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고, 동천관과 강사포를 착용하고 축하를 받았다. 또한 스스로를 '집'이라고 불렀고, 명령을 '조'·'칙'이라고 하였다. 신하들은 국왕을 '폐하'라고 불렀고, 축하하는 구호로 '만세'를 외쳤다. 고려의 자주 의식은 독자적인 묘호와 시호에서도 보인다. 왕건의 묘호는 '태조'이고, 시호는 '신성 대왕'이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수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황제의 위상을 확립한 고려 전기의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판적으로 읽은 결과를 각각 서술할 것. ○ ㉡에 들어갈 감정이입의 유형을 쓸 것. ○ (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밑줄 친 ㉢의 내용을 서술할 것.	합격모의고사 [출제 예제] 다음은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 관계의 형식인 책봉 - 조공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적중 유사] 주(周)의 왕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정치적 연맹관계에 있던 자를 주변 지역의 제후로 임명하였고, 이에 대해 제후는 사절을 보내 주왕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이를 각각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이라고 하였다. 한 대(漢代)에 주왕과 제후 사이에 형성되었던 책봉-조공 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에 적용하게 된 배경을 사상,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실상과 의미를 쓰시오.
전공B형 [7번(서술형)]	7. ㉠에 들어갈 왕조와 13경(經) 중 하나인 ㉡을/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 왕조가 ㉡을/를 참고하여 제정한 토지 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2가지 서술하시오. [4점] (가) 夫改定神祇 上儀也。欽修百祀 咸秩也。明堂雍臺 壯觀也。九廟長壽* 極孝也。制成六經 洪業也。…(중략)… 況堂堂有 (㉠) 正丁厥時 崇嶽滄海通瀆之神 咸設壇場 望受命之臻焉。 *長壽: 원후[元后, 왕태황태후(王太皇太后)]를 위해 건설한 궁 - 『文選』 符命 - (나) 乃均土地 以稽其人民而周知其數。上地家七人 可任也者家三人 中地家六人 可任也者二家五人 下地家五人 可任也者家二人。 - 『(㉡)』 地官 小司徒 -	합격모의고사 [출제 예제] 다음 사료에서 설명하는 토지제도의 (가) 명칭을 쓰고, 이 제도의 (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적중 유사] 한(漢) 대는 전조(토지세)를 경감시켜 1/30로 하였지만 자주 갹부(세금을 중복 징수하는 것)가 있었고 늙고 병든 사람도 모두 구산(인두세)을 냈다. 그러나 호민(호족)들은 토지를 침탈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땅을 나눠 주어 경작시켜 지대를 빼앗으니 그 명목이 1/30이라 하나 실례로는 5/10이었다. 부자는 교만하여 사악한 짓을 하고 빈자는 가난하여 간악한 일을 하니 모두 잘못에 빠져 형벌을 폐지할 수 없었다. 지금 천하의 전토의 이름을 고쳐 왕전(王田)이라 하고 노비는 사속(私屬)이라 하여 모두 사고 팔지 못하게 하라. 1호(가구) 당 남자 인구가 8인을 넘지 않으면서 전토가 1정(井)이 넘는 자는 남은 전토를 나누어 구족(九族)과 향당(鄉黨)에게 주어라. - 『한서』 식화지 -

전공B형 [9번(서술형)]	9.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나는 ㉠ 광둥(廣東)에 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농촌 개혁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도시 개혁도 막 시작되었으며 ㉡ 경제 특구도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 (중략) ... 당의 11기 3중전회 이래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려면 관건은 ㉢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중략) ... 누구든지 3중전회 이래의 노선, 방침, 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인민들이 승낙하지 않아 누구든지 타도될 수 있습니다. ... (중략) ... 판단의 기준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 국력 증강,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유리한가의 여부입니다. ... (중략) ... 계획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별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이/가 있습니다. 계획과 (㉣)은/는 모두 경제 수단입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착취를 줄이고 양극화의 해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의 부(富)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 「□·□·□·□ 등지에서의 담화 요점」 -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서 밑줄 친 ㉡이 설치된 도시명을 1가지 쓸 것. ○ 밑줄 친 ㉢의 내용을 서술할 것.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쓸 것.	합격모의고사 [출제 예제] 다음 중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밑줄 친 ㉠~㉣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적중] 중화인민공화국은 1978년 12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계중앙위원회 제3차전회에서 ‘문화대혁명’을 정식으로 부정하고, “사상을 해방[解放思想]”하고 실제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자[實事求是]”는 입장으로 전환되어, 중국 공산당 지도 방침이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 전환되면서 중국식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덩소평은 이후 ㉠ 1979년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창하며 개혁 ·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1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 제11계 6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혁명’이 ‘10년 내란’이라는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편 중국은 ㉡ 개혁 · 개방의 과정에서 정치 민주화의 요구도 점차 분출하기 시작하여, 1989년의 ‘6·4’(㉢)이 전개되었다. 이후 ㉣ 1993년 개정된 헌법에 나타난 국가 건설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	---	--